

【고 시】

- 정선군 고시 제2018-206호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· 고시.....2

【공 고】

- 정선군 공고 제2018-1172호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.....9
- 정선군 공고 제2018-1188호 정선 군관리계획(시설:도로, 주차장, 공원) 결정(변경)(안) 공람·공고.....12

□ 발행 :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(전화:560-2213, FAX:560-2592)

고 시

정선군 고시 제2018-206호

소규모 위험시설 지정·고시

「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(소규모 위험시설의 지정 및 관리)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(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고시), 같은법 제8조(통행제한)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규모 위험시설을 지정·고시 합니다.

2018년 11월 13일

정 선 군 수

1.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내용

시 설 명 칭		위 치	지 번		정 비 계 획		통행제한
구 분	명 칭		시 작 지 점	끝나는 지 점	연장(m)	폭(m)	
합 계	1 개 소						
소 교 량	광덕리 소교량	정선군 남면 광덕리	산19-1	1182	40	3	5톤 이상차량 통행 금지

2. 소규모 위험시설 통행제한 내용

- 5ton이상 차량(건설기계 포함) 통행제한

3. 소규모 위험시설 관리기관 : 정선군 안전건설과

4. 문의처 : 정선군청 안전건설과 안전관리팀(☎033-560-2158)

5.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계획 : 2018년 이후 보수공사 시행

※ 사업시기는 예산(재난안전특별교부세 및 도비)확보 계획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

공 고

정선군 공고 제2018-1172호

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.

2018년 11월 13일

정 선 군 수

1. 개정이유

- 호국보훈수당의 경우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한 지급 대상자이나, 사망위로금의 경우 국가유공자의 한해 지급하고 있음.
- 이에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및 같은 법 제3조에 의거, 국가를 위하여 희생·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사망위로금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위로금 지급 범위를 개정 함 (안 제9조)
 - 호국보훈수당을 지급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위로금 지급
- 그 밖에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 함. (안 제5조, 제6조, 제10조)

3. 개정 조례안 : 별첨

4. 입법예고 : 2018. 11. 14 ~ 2018. 12. 04

5. 의견제출

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4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(참조: 주민생활지원과장)에게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제출사항

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- 제출자의 성명(법인,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기타 참고사항

나. 의견제출 및 문의처 : 정선군청 주민생활지원과

- 연락처 : 전화(033-560-2314), 팩스(033-560-2588)
- 주 소 : (23161)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주민생활지원과

다. 제출방법 : 우편, 팩스, 직접방문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 :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개정조례안 내용	찬성여부		의견	비고
	찬성	반대		

정선군 조례 제 호

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중 “지원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상”을 “군에”로 한다.

제6조제9호 중 “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”를 “나라 사랑 정신을 기리는 데”로 한다.

제9조제3항 중 “수당을 받고 있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”를 “제1항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”을 “사람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「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」”를 “「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」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예우 및 지원대상) 이 조례 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<u>지</u> <u>원</u> <u>기준일</u> 현재 군에 주민등록상 주 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 훈단 체로 한다.	제1조(예우 및 지원대상) ----- ----- 군 에 ----- ----- -----.
제6조(공훈선양사업의 추진) 군수 는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 랑 정신을 존중하고 선양하기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 양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 1. ~ 8. (생 략) 9. 공훈과 <u>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</u> <u>위하여</u>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, 거리·공원·광장 등 공공시 설물에 희생·공헌자의 이름 등 을 명칭으 로 부여	제6조(공훈선양사업의 추진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8. (생 략) 9. ----- <u>나라 사랑 정신을 기리</u> <u>는 데</u> ----- ----- -----
제9조(호국보훈수당과 사망위로금 의 지급) ①·② (생 략) ③ <u>수당을 받고 있는 제1항제1호</u> <u>부터 제3호까지의</u> 국가보훈대상자 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에게 30만원의 사망위	제9조(호국보훈수당과 사망위로금 의 지급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제1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

로금을 지급한다.

④ (생 략)

제10조(수당의 지급대상자 등) ①
(생 략)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
하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
다.

1. (생 략)

2. 「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조
례」 에 따라 참전유공자 공로수
당을 받는 사람
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수당의 지급대상자 등) ①
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사람 ---

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「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
례」 -----」

관계법령 발췌

□ 국가보훈 기본법

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 사랑정신을 선양하고,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·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(財源)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.

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제2조(예우의 기본이념)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(戰歿軍警)과 전상군경(戰傷軍警)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(龜鑑)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,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(榮譽)로운 생활이 유지·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.

제3조(정부의 시책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·발전시키며,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.

정선군 공고 제2018-1188호

정선 군관리계획(시설:도로, 주차장, 공원) 결정(변경)(안) 공람·공고

정선 군관리계획(시설:도로, 주차장, 공원)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·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8년 11월 22일

정 선 군 수

1. 공람목적 : 정선 군관리계획(시설:도로, 주차장, 공원)결정(변경)(안)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
2. 위치 :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(봉양리, 애산리, 북실리) 일원
3. 정선 군관리계획(시설:도로, 주차장, 공원)결정(변경)(안) 도서 : 게재 생략(공람장소 비치)
4. 관련도서 비치 및 열람 장소 : 정선군 도시건축과, 정선읍사무소
5. 열람기간 :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(2018. 11. 22. ~ 2018. 12. 07.)
6. 의견제출 방법 및 장소 : 열람 기간 내 정선군 도시건축과 및 정선읍사무소에 서면 제출
7. 기타사항 : 문의사항은 정선군 도시건축과 (033-560-2132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아울러 본 공람·공고(안)은 최종 결정된 내용이 아니며,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정선 군관리계획(시설:도로, 주차장, 공원) 결정(변경)(안) 공람 · 공고 열람자 의견서			
공 략 건 명	정선 군관리계획(시설:도로, 주차장, 공원) 결정(변경)(안)		접수번호
			접 수 일 2018. . .
공 략 인 인 적 사 항	주 소		
	성 명		
	연 락 처		
토 지 소 재 지	위 치		
	면 적		
	기 타 사 항		
공 략 의 견			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 따라 열람·공고한 “정선 군관리계획(시설:도로, 주차장, 공원)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 2018년 월 일 신청인 (인) 정 선 군 수 귀 하			

